

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(강광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16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5. .

발 의 자 : 강광주 의원 등 8 명

1. 제정이유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에 따라 안산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 및 안산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, 시민 등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미세먼지 예방 기본계획수립·시행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~제6조)
-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8조)
-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, 영향조사 연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- 대응대책본부 운영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5. 예산수반사항 : 별첨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별첨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등에 따라 안산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미세먼지”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.
 - 가. 미세먼지(PM-10) :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μm) 이하인 먼지
 - 나. 초미세먼지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μm) 이하인 먼지
2. “취약계층”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영유아, 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을 말한다.
3. “대기 측정망”이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.
4. “비산먼지”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,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,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,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③ 모든 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,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
2.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
3.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
4.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
5.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
6.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사업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예방 및 저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예방 및 저감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측정 및 피해최소화)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및 저감사업의 효과적 추진·활용을 위하여 대기 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, 해당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8조(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) 시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 소재 각종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내공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·홍보 및 정보제공)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,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

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정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정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,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영향조사 및 연구 등)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, 예방 및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.

제11조(대응대책본부 운영)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 시장은 예방 및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관계기관·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·단체 등의 예방·저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	시 의 원	강광주 대표발의 (행정 3573)
안		
자		

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166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24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당초 “지원할 수 있다.”의 임의 규정을 “지원해야 한다.”로 수정함.
-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자 주민제안 공모 실시 근거를 신설함.

주요골자

-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.”로 수정함.(안 제9조)
-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(주민제안)를 신설함.

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지원할 수 있다.” 를 “지원해야 한다.” 로 한다.

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주민제안)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